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논쟁수업 주제 보충 자료

[학교생활]

■ 주제 1

- 학생의 개성 실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용의복장규정은?: 집단생활에서 자율성의 범위와 그것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집단생활에서 용의복장에 대한 자율성은 어디까지인가?

▶ 주제 선정 배경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와 그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 등을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규칙으로 제·개정할 수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는 학생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학생 개인의 개성 실현 권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교규칙으로서 학교용의복장규정의 내용 및 학생 개인에 대한 효력 범위와 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다.

■ 주제 2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의 참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학생들은 피교육자이다. 교육을 받는 사람이 교육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 한계는 어디인가?

▶ 주제 선정 배경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그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그리고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심의사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인 경우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은 교원,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로 한정하고 있다. 학생 의견 반영도 사안별로 주관적인 판단 요소인 '필요한 또는 밀접한 경우' 등으로 사유를 한정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기 의사 표현 및 반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 주제 3

- 교칙 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합리적인 의견 수렴 방안은?: 교칙 개정시 교칙 적용의 직접 대상인 학생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와 교육자인 교사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어야 하는가?

▶ 주제 선정 배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④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에서도 학생 의견 제출 권한이 보장되어 있으나, 학생·학부모·교원 간의 의견 수렴 방안과 학교 구성원 3주체들 간의 반영 비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학교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

■ 주제 4.

-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공평한 권리 보장인가 선택권의 침해인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의 자유가 우선인가? 아니면 학생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준화가 우선인가?

▶ 주제 선정 배경

-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고등학교 입시 시행에 따른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명문고등학교로 집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 고등학교 간 서열화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고교 입시를 위한 과열 경쟁 해소, 평균 학력의 증가, 학교 시설의 향상, 재수생 감소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해소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고교 교육의 하향 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쟁원리 완화,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새 정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존폐 논란과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생활]

■ 주제 5.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코딩교육과 인문학교육 중 무엇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가?: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획득해 간다고 하는 인공지능시대, 교육은 인간의 어떤 능력을 육성해야 하는가?

▶ 주제 선정 배경

- 컴퓨터, 인터넷으로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정보혁명)에서 나아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상호간의 '연결'을 강조하는 초연결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를 4차 산업혁명이라 말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IT를 중심으로 디지털 교육과 코딩교육 등과 같은 과학기술교육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통섭과 융합을 강조하는 '초연결시대'를 강조하며 교육에서 인간 중심의 융합을 강조하는 인성·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및 인문학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우리 교육은 인간의 어떤 새로운 능력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교육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지 많은 논쟁이 있다.

■ 주제 6.

- '고소득자 누진과세 확대'는 정당한 과세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낙수효과에 근거한 고소득자 감세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증대하여 분수효과를 볼 수 있는 고소득자 누진과세를 확대해야 하는가? 고소득자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추가 세금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 주제 선정 배경

-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즉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누진세는 경제 격차를 야기하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고소득자에게 누진과세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그것이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고소득층의 소득에 따른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누진과세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많이 걷은 세금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 주제 7.

- 원자력 발전소는 경제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가, 안전을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가?: 안전을 위해 원전을 폐기할 경우 전기세가 비싸지면 감수 할 것인가? 원전은 폐기 비용을 고려할 때 정말 경제적인 에너지인가?

▶ 주제 선정 배경

-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핵분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설계된 시설이다. 원자력발전방식은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초기 건설비용이 높은 편이나, 연료비가 월등히 싸기 때문에 발전소의 긴 수명기간을 통해 볼 때 발전비용이 적게 든다. 또한 원전은 온실 기체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저렴한 연료가격, 높은 연료비축 그리고 저렴한 발전 비용이 장점이다. 하지만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과 방사성 폐기물은 지구환경과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다. 지진 등으로 인한 사고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소련의 체르노빌 발전소의 사고와 미국 스리마일 섬 발전소, 일본 후쿠시마 발전소의 사고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를 통한 발전은 그와 같은 치명적인 위험은 없으나 발전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너무 크고 대처하기가 매우 힘들다. 또한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 수명이 다한 원전 철거 비용, 쓰고 난 열로 인한 주변 생태계의 영향 등이 단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보호 단체들은 완전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 주제 8.

- 2017년 서울 성북구청이 처음 시행한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제도를 우리 구에서도 실시한다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당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그 한계는 어디인가? 학생들이나 학교밖 청소년에게 사회가 줄 수 있는 수당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주제 선정 배경

- 2017년 서울 성북구청에서는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는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적립하여 발급하는 카드이다.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은 당해 연도에 만 13세가 되는 청소년, 성북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 및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발맞춰 극장, 서점, 미술관, 박물관, 학원·교습소 등 문화, 예술, 체육활동 및 진로체험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학교 1학년 때만 제공하고 그 금액도 10만 원에 머문다는 점에서 걸치레일 뿐이고 실질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 없다는 우려 어린 시각도 존재한다.
- 현대복지국가에서는 보장하는 복지 수준에 대한 다른 주장이 있다. 특히 선거철에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복지 공약을 내놓기도 한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복지 수준은 '최저 생활 보장'이 적절하다는 주장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 보장'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 수준, 노동 의욕 유지 방안 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주장이 달라질 것이다.

[정치사회]

■ 주제 9.

- **현행 선거권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하다면 선거권 제한 연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이 교육감 선거권을 갖는 것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 주제 선정 배경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장애 대한 선거권 연령은 현재 19세 이상이다(공직선거법 제15조). 2005년에 20세에서 19세로 선거권 연령이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선거권 연령을 19세 보다 하향시켜서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선거권 연령을 하향시킨다면, 보다 많은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의 의사가 정치에 더욱 많이 반영되고, 청소년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청소년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한편으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권 연령이 2005년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그 이전까지의 변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도 크게 고양시켰으므로 중등교육 과정의 일정 연령의 청소년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선거권 연령의 하향 문제는 청소년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첨예하다.

■ 주제 10.

- 청소년의 '정당가입'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연령 기준은?: 청소년의 정당가입이 청소년의 과도한 정치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한가?

-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항에서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 초중고 교원, 외국인 등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 따라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면 정당가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소년의 '정당가입'의 필요성에 따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청소년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해 만 16~19세 미만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단 청소년 당원에게는 해당 정당의 당헌 또는 당규에 따라 의결권 행사, 당비 납부 등 당원의 권리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향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대한 특수성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 주제 11.

- 교내에서 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학습과 교육의 공간인 학교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허용한다면 어떤 형태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 교내에서 학생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를 통한 다양한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내에서 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을까? 청소년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의사가 건강한 여론형성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청소년도 자신의 생활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인 독립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연령인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선거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상황과 연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있다.
-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분출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하여 교내에서 학생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허용 가능한 범주와 그 사례를 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있다.

■ 주제 12.

- 핵위협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집단관계에서 기아 예방, 전염병 예방, 아동지원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야 하는가?
-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는 아주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 하였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는 것은 대북제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엔 등 국제기구와 개별 지원국이 자연재해와 식량부족으로 기근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북한정부에 식량과 의료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고 핵위협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한편으로는 기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말 그대로 인도주의적인 것이므로 정치적·군사적 목적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북한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악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식량지원 덕분에 북한정부는 막대한 군비를 계속 지출할 수 있게 되고 핵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는 유엔 보고서도 있다. 이에 따라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핵위협 상황에서 우리의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에 대한 재개 여부와 그 범위 등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

[세계시민]

■ 주제 13.

-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때 우리 국민과 똑같이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 시민권은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온전히 보장된다고 할 때,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제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 취업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90만명이 넘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3D업종 등 소규모 제조업이 인력난을 겪으면서 유입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가 대규모로 이주하였다. 정부는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 2007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갔는데,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초 3년 취업기간에 2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5년 동안 국내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동포 등 외국동포는 한국에 연고자가 없어도 자유왕래하며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가 실시되었다.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에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를 단기간만 사용하고 장기체류를 금지하는 국가정책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재고용하고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고용주에 의해 노동 인권을 차별당하는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나 직업활동 별로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므로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국민과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향유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업허가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근로자로서 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라면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2003. 7. 1. 발효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음)

■ 주제 14.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등 국경을 넘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계속 준수하는 것이 국내 경제에 매우 불리해진다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여야 하는가?
 - 환경오염은 국경 안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비교적 최근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환경오염문제 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방사능물질 유출사건, 대규모 가스누출 사건, 대형유조선 침몰에 따른 해양오염, 오존층 파괴행위, 기후온난화협약 위반행위 등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는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따른 국제분쟁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의 국제책임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국제법상 각국은 자국에서의 위험한 활동으로 인해 타국에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자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타국에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져야 한다.

■ 주제 15.

- 내전, 독재, 종교탄압 등으로 주변국가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대처방안은?: 2015년 유럽난민사태에 대해 유럽국가들이 취했던 상이한 대처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975년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 2,944명을 부산에 설치한 난민 수용소에 받아들인 바가 있다. 이후 이들 대부분이 미국 등 16개 나라로 출국하였다. 남베트남이 멸망한 후 베트남 공산정권으로부터 피난하는 난민들에 대해 이웃국가인 아세안(ASEAN) 회원국들은 수용을 거부하였다. 1979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타이 등에 약 26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들자 이들 국가들은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난민을 몰아내어 인도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바 있다.
 -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4년 말에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는 1,900만 명이 넘었고 이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내전으로 인해 탈출한 시리아 난민은 2014년 기준 390만 명으로 가장 큰 난민집단에 속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난민 집단을 구성해왔던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수(260만)보다 더 많은 것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2015년

지중해 또는 남동유럽을 통해 유럽 연합 내로 망명하는 난민과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유럽난민사태가 발생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국가별 난민 할당제,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유럽 연합 외부 국경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난민이 급증하면서 국경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던 유럽지역 내에서 국경에 대한 통제가 부활하였고,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수용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난민을 수용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규모의 난민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난민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종교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